

정부는 오는 3월까지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부동산 실명제를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93년부터 실시된 금융실명제와 함께 현정권이 출범하면서 내 걸었던 경제개혁과 경제정의 실현을 향한 완전한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부동산 실명제란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일치시키는 제도이다. 부동산의 거래와 소유를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강행법규이다. 입법예고와 경과기간을 합치면 완전히 실시되기 위해서는 1년반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련한 입법안을 보면 명의의 신탁을 금지하는 조치가 확실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동산의 투기와 탈세 등 비리

의 정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래의 취지에 걸맞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두루 알려진 바와 같이 올해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가격의 폭등이 겹쳐져 왔다. 금년 6월에 치러질 네가지 지방자치선거의 영향으로 부동산시

장은 더욱이 예상되었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될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와 맞물려 더욱 그렇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동산실명제의 단행은 분민정부의 시의적절한 결단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중요한 개혁의 결단이 일시적인 충격요법에 머물지 않기를 우리 국민 모두는 비라고

있을 것이다. 이제 부동산실명제를 실효성있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를 뒷받침할 몇가지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첫째는 보지전산망과 금융전산망의 통합적인 운영으로 부동산투기를 꾸준히 감시해야 한다.

둘째는 세금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수불가결하다. 우리 국민들에게 큰

사설

충격요법 아닌 제도 정착 기대

열린 마당

부동산 실명제

"종교재산도 특례인정 요구 마땅"

정부는 오는 3월까지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부동산 실명제를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아울러 실명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부동산 실명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하고, 일은 재정경제원의 실무자들이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위 실명제법률안에 의하면 이 법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탈세·탈법 등 반사회적 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못하게 하고, 모든 부동산 권리는 실소유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있다(1조).

비실명을 금지하는 '명의 신탁'의 범위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이전 또는 신탁을 청구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계약(부동산 취득계약)에 관한 차등등기, 가등기 및 타인명의로 둔 채차명자(借名者)와 하는 소유권 이전확약계약 등을 말한다(2조).

이 법은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부칙1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실제로 소유한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고(3조), 본인명의로 하지 아니하는 명의신탁의 약정은 일체 무효이고 당사자 사이의 채권

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4조). 이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부동산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부동산거래가 법률상 무효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은 있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대조항으로 보인다.

실명으로 이전해야 하는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6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내

의 30%이하의 비율에 처하고(9조),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한다(8조).

이 법시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점이 3가지 있다. 첫째로 예외인정의 범위이다.

위 법안은 ① 신탁법·신탁업법에 의한 신탁등기 ②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등기 ③ 기업의 공장부지 매입을 위한 일시적 신탁등기

거래의 방지와 부동산거래의 정상화 및 가격안정이다(1조 참조). 그래서 투기거래의 목적이 아닌 중중재산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다(10조2항). 그렇다면 투기거래의 목적이 아닌 종교재산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본다. 특히, 불교계에서는 전국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명목이 조계종, 조계사, 본말사, 창건주 등으로 된 경우에 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통일된 지침을 추무원에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입법공청회에 불교재산에 대한 특례인정을 위한 의견개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가 의견

이재훈 (변호사)



에 실명화 등기를 하면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고(6조), 세금에 관한 특별취급을 받는다(7조).

그러나 95년1월1일 이후에 한 명의신탁계약의 경우는 실명화하더라도 위 특례를 받을 수 없다(부칙2조).

국세청장은 명의신탁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11조), 유예기간내에 실명화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이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부동산가액의 100분

의 30%이하의 비율에 처하고(9조),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한다(8조).

이 법시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점이 3가지 있다. 첫째로 예외인정의 범위이다.

위 법안은 ① 신탁법·신탁업법에 의한 신탁등기 ②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등기 ③ 기업의 공장부지 매입을 위한 일시적 신탁등기

현대만평

박구원



저들도 저와같은 인격체로...

시론 올챙이 시절 잊은 인권경시

해방50년, 올챙이 박두는 정부의 요란한 세계화 구호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명동성당 텐트농성으로부터 시작됐다.

UR타결로 국경없는 경제전장이 발달했고 집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은 세계화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세계화의 개념은 70년대를 종미한 '근대화'와 일맥상통한 일면을 갖고 있다.

가난을 극복하고 산업 근대화를 최단시일 안에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기본권의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유신체제를 유지했다. 일상불편한 효율성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었다. 인권이 유린되고 민주화를 외치는 국민들의 저항은 하루도 풀일 날이 없었다.

30여년의 길고 긴 반독재투쟁으로 마침내 문민정부가 탄생했다. 김영삼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민주와 부흥의 산물이다. 문민정부가 내세우는 정치 이념이 마땅히 과거군사정부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야 하는 것은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다.

정부가 주장하는 세계화의 주된 테마는 산업 경쟁력의 제고와 국가자원의 효율적 관리에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반드시 경쟁에서 낙오하는 계층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빈부격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에는 3백만에 이르는 국민층이 있다. 이들은 노동력을 상실했거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자본이 없는 사람들이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GNP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미 10% 수준을 넘어선 선진국과는 비교가 안되고 개발도상국 가운데에서도 최저수준에 불과하다.

대다수가 대학생 신분인 농성자들은 한국에 가던 월 5백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핑에 빠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지정한 인력송출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1천3백불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기타 비용을 합해 2천불의 비용을 들여 한국에 왔다. (이 돈은 내일 근로자가 일년동안 한 푼도 안쓰고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임) 그러나 한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루 12~13시간의 장기노동과 2백10불의 저임금, 인간 이하의 대우 뿐이었다.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한마디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그들은 현대판 노예가 되고만 것이다.



김동훈 (경블론 사무처장)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절규하고 있다.

첫째, 저희들을 기술연수생으로 데려왔으면 기술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둘째,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고 하루 12~13시간 일을 시키면 그만큼 댓가를 줘야 합니다. 셋째, 배아아 간 월급을 돌려줘야 합니다. 넷째, 공장에서 폭력이 없어야 한다고 부탁했는데도 오실러 수갑을 채우고 유설과 폭행을 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사람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여권을 빼앗고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섯째, 거짓된 약속으로 속여서 우리를 데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비록 가난한 나라에서 왔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노예처럼 당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인간존재 그 자체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과거 여러분의 조상들도 저희들과 같은 일을 겪었지요. 그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지적처럼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되어 누이들은 정신대로, 형님들은 징용으로 끌려가 성적 노리개와 노예로 전락한 비극의 역사를 갖고 있다. 사양산업체에 외국인인 수입해 저임금 강제 노동을 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세계화인가. 이렇게 해서 몇 종의 돈을 번다고 국민 경제가 중요해지는가. 이미 부당한 처우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의 나라에 돌아가서 적극적인 반한일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국민의 양심과 인격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는 파렴치한 행동을 더 이상 방치해 두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마땅히 수입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인권보장과 산재보상,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주는 <육방에경>에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

'기업주는 근로자의 능력에 따라 일을 맡기고 항상 음식을 대어주며 수시로 노력의 대가를 치워주어야 한다. 병이나면 치료해 주고 가르쳐서 깨우쳐 주어야 한다.'

여권을 돌려달라

단지 경쟁력을 배양하고 국제감각만 익힌다고 세계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인권보장과 환경 등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하고 사회복지제도가 확충돼야 한다.(인권보고서에 의하면 양심수가 6공 때보다 양산되고, 복지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인류의 공존과 번영, 무엇보다도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인류의 공동선인 자유·평등·박애정신에 입각하여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인류애를 바탕으로 선린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지난 9일부터 산업기술 연수생으로 입국한 13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산업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에서 수입해 들어온 합법적인 체류자이다.

'여권을 돌려달라', '임금을 달라', '배려지마', '성폭행 하지마' 등의 피켓을 들고, 자신들이 노예와 다를 바 없다면서 쇠사슬을 손에 감고 농성하고 있다.

1995년도 원효학당 신입생모집

원효학당은 원효대사의 사상에 입각하여 인류의 미래를 개척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동·서양의 철학사상에서부터 현대의 제반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교과과정과 강의내용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원효사상의 요체를 현대적으로 이해하도록 학당을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넓은 학문적 견지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물음에 해답을 주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집과정	기간/이수학점	응시자격
동장법사과정	4학기/48학점	고졸 및 동등학력 이상자
온장법사과정	2학기/24학점	본 학당 동장과정 이수자
금장법사과정	2학기/24학점	본 학당 온장과정 이수자
유리장법사과정	4학기/48학점	본 학당 금장과정 이수자
마니장법사과정	4학기/48학점	본 학당 유리장과정 이수자

제출서류	수량
1. 입학원서(본 학당 소정양식)	1부
2. 사진(3x4cm)	3매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방법
1. 전형방법	서류전형
2. 합격자통보	개별통보

상설불교개론 안내

본 학당에서는 매학기 불교개론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연구하면서 처음 접하는 용어와 기초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은 본학당에서 상설하고 있는 불교개론강좌를 통하여 그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3월 9일(木)부터 3개월간 ■시간: 13:30~16:30
■대상: 제한 없음 ■수강료: 10만원

원서교부 및 접수

1. 교부 및 접수마감 1995년 2월 25일까지
2. 교부 및 접수처 본 학당 사무국

개설강좌

불교개론, 불교철학, 인도철학, 불교사, 불교언어, 원시경전강독, 대승경전강독, 논서강독, 선서강독, 원효사상강독, 한국불교강독, 교양강좌 등.

통신강좌안내

본 학당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출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통신강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강좌를 이용하시면 수강하고자 원하는 과목 강의의 각자 편리한 시간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